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안

제안년월일 : 1993. 4. 7

제안자 :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의안번호	173
------	-----

1. 제안이유

관내 신평동 642-10번지 일원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이지역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다음 사유로 설치 반대한다.

1.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예정지는 주거밀집지역과 인접
2. 예상되는 교통의 혼잡과 혐오시설의 집중화에 따른 공해의 심화 등으로 지역개발 저해
3. 도심 순환도로의 경유지로 낙동대교가 위치하게 될 서부산의 관문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단 등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설치 반대
4.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위치선정 재고
5.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현재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정공단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부당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결의문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관내 신평동 642-10번지 일원에 설치할 경우 이지역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37만 구민을 대표하는 사하구의회는 제24회 임시회에서 혐오시설인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소각장 설치예정지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유해 독극 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야기될 주민피해가 극히 우려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산업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둘째, 서부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우리 사하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교통의 혼잡과 쓰레기매립장, 해상분뇨투기장 등 혐오시설의 집중화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소각장 설치를 절대 반대한다.

셋째, 소각장 설치예정지는 부산시 2000년대 도시개발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순환도로의 경유지이며 낙동대교가 위치하게 될 서부산의 관문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일체의 혐오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넷째,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 개발에 천혜의 입지를 갖춘 유일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불때 혐오시설 설치의 재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우리구 관내에서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정공단이라는 이유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우리 사하구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예정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 4. 8.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